

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

□ 제정 : 2012. 10. 11

□ 개정 : 2017. 05. 0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위치) 본 센터는 장애학생지원센터라 칭하고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조(목적) 본대학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교육내실화와 취업지원(취업상담, 교육 등)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생 학습지원(수화·문자통역, 점자, 대필, 이동, 학습지원기자재 대여 등)
2. 장애학생 취업 지원 업무
3.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
4. 기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2장 구 성

제4조(장애학생지원센터장)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에 1인의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둔다.

②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
③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조직)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시각장애, 청각언어장애, 지체(뇌병변 포함)장애, 기타 장애(지적장애 등) 지원 및 점자문헌전자정보의 개발과 취업지원 등을 위해 필요분야를 설정하여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 각 영역별로 콘텐츠연구개발, 학습지원, 관리 운영 등을 위한 담당업무 및 세부적인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구성)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연구원 및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를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임용) 조교와 직원의 임명은 본교 인사규정에 따르며 연구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결정한다.

제3장 위원회

제8조(지도위원회) ①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학생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지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.

④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

제4장 재정 및 회계

제9조(재정)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재정은 대학 교비예산에서 계정되는 예산액과 수익금,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대학 경리과에서 관장한다.

제10조(회계년도)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회계 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
제11조(예산결산)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본교 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5장 보 칙

제12조(사업보고) 삭제

제13조(규정의 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내용은 수원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 승인을 거쳐 본 규정의 시행세칙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1일 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